

「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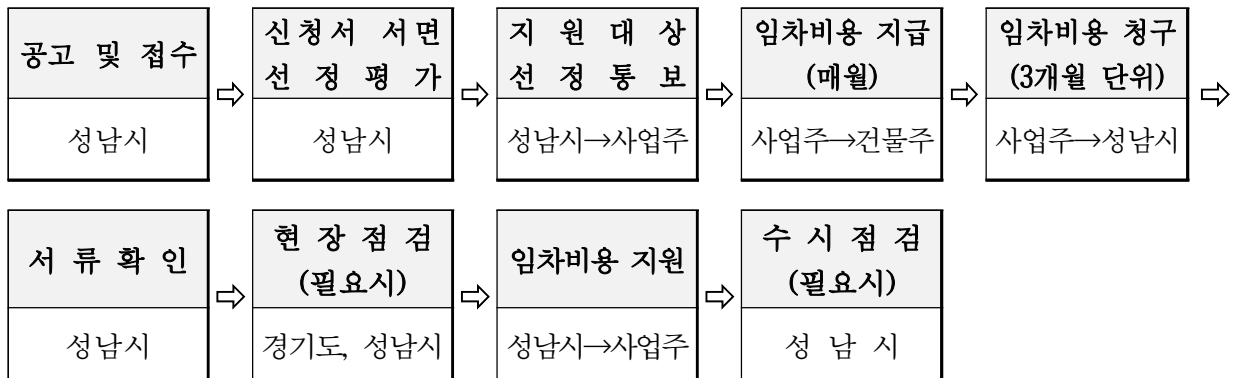
「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. 5. 8.

성 남 시 장

1. 사업개요

- 지원대상: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 임차 운영 기업
- 지원규모: 4명 내외(예산 범위 내 선정)
 - ※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 수 및 기업별 지원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
- 지원기간: 2026. 5. ~ 12. (8개월)
- 지원내용: 기숙사 임차비 지원
 -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차 시, 월 임차료 80% 이내 지원
 - 기업별 3인(외국인 최대 1인) 이내, 1인당 월 30만원 한도
- 지원절차



2. 신청기간: 2026. 5. 11.(월) ~ 5. 27.(수) 18:00

3. 신청방법: 방문 또는 우편접수

-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, 성남시청 8층 기업혁신과 우)13437
- 우편 접수는 5. 27.(수) 소인분까지 포함

4.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제출부수
필수 서류	1 「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」 신청서 [서식1], [서식1-2]	1부
	2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, 중복지원금지 협약서 [서식2], [서식3]	1부
	3 사업자등록증 사본	1부
	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접수기간 내 발급분)	1부
	5 최근 3년(2023~2025)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각 1부	각 1부
	6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	각 1부
	7 기업자본총액 및 부채총액을 증명하는 자료(표준재무제표 등 최근 3개년) ※ 국세청 발행분(재무 건전성 확인용)	각 1부
	8 중소기업 확인서	1부
	9 임대차 계약서, 기업명의 통장 사본	각 1부
	10 입주 노동자 근로계약서, 외국인 노동자 근로확인을 위한 증빙서류	각 1부
해당 하는 경우	11 혁신형 제품 또는 신기술 보유 증빙자료	각 1부
	뿌리기업 / 여성기업 / 장애인기업 / 일자리 우수 인증 / 산업단지 RE100참여기업	각 1부
※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, 제출서류 외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		
※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		

5. 선정방법: 심사기준에 의한 서류심사(고득점 순 선정)

- 지원 타당성(30), 신청내용·운영의 적정성(40), 재무건전성·성장가능성(30)
- 가산점(15): 뿌리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경기도 일자리 우수인증기업, 산업단지RE100참여기업(각 3점)
- 감점(-6): 과거 지원대상 선정 이력 여부(선정된 횟수×-2)
- 우선 선정 대상 기업(신규인력·청년 포함)을 최우선 선정하며, 미달 시 일반 신청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

- 우선 선정 대상 기업 간 경합 발생 시에도 심사항목별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결정함
- 최대한 많은 업체에 지원 기회를 주기 위해, 한 기업에서 여러 호수의 기숙사 지원 신청 시 일부 기숙사만 선정 될 수 있음

6. 세부 사업내용

○ 지원내용 및 조건

-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·임차 시, 월 임차료 80% 이내 지원
 -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
- 기업별 3인(외국인 최대 1인) 이내, 1인당 월 30만원 한도
 -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%만 지원
 -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사업주(또는 이용자) 부담
 - 불법체류 등 불법거주 외국인 노동자 제외
- 신규인력* 또는 청년노동자** 포함 시 우선 선정
 - * 신규인력: 사업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입사자(2023. 5. 9.이후 입사자)
 - ** 청년노동자: 사업공고일 기준 만39세 이하 노동자(1986. 5. 9.이후 출생자)
-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
 - 6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자 등 제외
- 근무지와 기숙사 모두 성남시 소재여야 함
 - 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 근무지와 직선거리 10km이내는 예외적으로 허용

○ 지원제외 대상

- ① 업무용 오피스텔, 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
-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
- ③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
- ④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작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
(예 : 기업, 기업대표,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)
- ⑤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
-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- ⑦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노동집중기관(한국노동위원회)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
- ⑧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
- ⑨ 국세, 지방세 체납 기업
- ⑩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

○ 지원방식

-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성남시에 제출
 - 임대차 계약 서류, 기숙사 이용 근로자 현황 등
-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
 - 청구 시 임차료 지급 관련 증빙서류와 근로자 근로 관련 서류 등 제출
 -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 자료 검토(필요시 현장 확인)
- 기숙사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
 -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 해지 또는 공실 발생 시 10일 이내 성남시에 통보하여야 하며, 이때 공실 발생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(단, 월 15일 이상 근로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월세 30만원 한도 내 지원)
 - 기숙사 이용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성남시에 통보(공문)

7. 결과발표: 2026. 6. 1.(월) /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개별 통지

○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미선정된 기업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

8. 문 의 처: 성남시청 기업혁신과(☎ 031-729-2583)

붙임 제출서식 각 1부.

[서식1]

「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」 신청서					
신청 기업 정보	업체명			사업자등록번호	
	주생산물			설립일자	
	주소				
기업 현황	구분	'24년	'25년		
	종업원 수(명)			청년인원(만39세이하)	명
	매출액(백만원)			기숙사 유무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
대표자	성명			전화번호	
	휴대폰			E-mail	
실무 담당자	성명	(직위 :)		전화번호	
	휴대폰			E-mail	
기숙사 신청 내용	신청인원	00명(신규,청년노동자 00명)		신규채용 비율	%
	기숙사 대상 건축물 주소				
	임차주택 유형	아파트, 원룸 등			
	월 임차료 (관리비 제외)	월 총 임차료	지원 요청금액	기업 부담금액	
		천원	천원	천원	
	신청사유 (50자 이내)				
경기도 및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『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』에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.					
2026년 월 일					
기업명 :		대표자 :		(인)	
성남시장 귀하					
첨부 서류	①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,중복지원금지 협약서, ②사업자등록증 사본,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, ④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, ⑤중소기업 확인서 ⑥임대차 계약서 및 통장 사본, ⑦입주 노동자 근로계약서, 외국인 노동자 근로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등				

[서식1-2]

기숙사 이용 근로자 명단								
N O	입주 근로자				임차현황			
	성명	생년월일	입사일	연락처	사용구분 (단독/공동)	월 임차료	신청금액 (월 임차료의 80%) *1인한도 30만원	비고
1					단독	500,000	300,000	신규
2					공동	800,000	600,000	기존
3								신규
4								
5								
6								
7								
8								
9								
10								
계		3명		월 임차료 : 1,300,000원 (월 지원요청금액 : 900,000원)				
<p>※ 기숙사 임차료 및 거주 인원수에 따라 지원</p> <p>(예시1) A원룸, 근로자 1명, 월 임차료가 40만원인 경우, 최대지원금인 30만원 지원.</p> <p>(예시2) B원룸, 근로자 2명, 월 임차료가 40만원인 경우, 임대료 80%인 32만원 지원.</p> <p>(예시3) C원룸, 근로자 2명, 월 임차료가 60만원인 경우, 임대료 80%인 48만원 지원.</p> <p>(예시4) D투룸, 근로자 2명, 월 임차료가 80만원인 경우, 60만원 지원.</p>								

